

## 별첨2. 바이오스펙트럼 정관 신규대조표

제1장 총 칙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b>제1조 (상호)</b> 이 회사는 바이오스펙트럼 주식회사 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BIOSPECTRUM, INC.로 표기한다.</p>	<p><b>제1조 (상호)</b> 이 회사는 바이오스펙트럼 주식회사 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BIOSPECTRUM, INC.로 표기한다.</p>	
<p><b>제4조 (광고방법)</b>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biospectrum.com">http://www.biospectrum.com</a>)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b>제4조 (광고방법)</b>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biospectrum.co.kr">http://www.biospectrum.co.kr</a>)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 등기상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www.biospectrum.co.kr">http://www.biospectrum.co.kr</a>) 를 일치하게끔 등기 수정</p>
제2장 주 식		
<p><b>제8조 (주식의 종류)</b> ③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 로 한다. ⑧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에서 3년 사이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p>	<p><b>제8조 (주식의 종류)</b> ③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⑧ 우선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 당시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 (동등배당)을 준용한다.</p>	

<p><b>제11조 (일반공모증자 등)</b></p> <p>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환할 수 있다.</p> <p>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p> <p>③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해당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삭제, 13조 신설)</p>	
<p><b>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b></p> <p>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임직원외의 자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없다.</p>	<p><b>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b></p> <p>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li> <li>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li> <li>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li> </ol> <p>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 평가액</li> <li>2.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li> </ol> <p>⑤ 아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액면가 이하로는 변경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li> <li>2. 부여 당시 4항의 금액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 받았거나 부여 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금액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각 행사대상 주식수로 곱한 금액의 합계가 각 부여 대상자별 5억원 이하인 경우</li> </ol> <p>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및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및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기입 여부 선택가능)</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li> <li>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li> <li>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li> <li>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li> </ol>	
--	--	--

<p>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p>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매수 선택권을 부여 받은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li> <li>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li> <li>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li> <li>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ol> <p>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의 이익 배당에 관하여는 본 정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발생한 경우</p> <p>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li> <li>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li> <li>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li> </ol> <p>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동정관의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b></p> <p>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b>(삭제)</b></p>	<p>-제13조(동등배당)으로 신설</p>
<p><b>제14조 (주식의 소각)</b></p> <p>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p>	<p><b>(삭제)</b></p>	<p>- 주식의 소각은 상법 제343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정관을</p>

을 소각할 수 있다.		준용하여 삭제
<b>제16조 (삭제)</b>		
<b>(신설)</b>	<b>제13조 (동등배당)</b>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b>(신설)</b>	<b>제14조 (주주명부 작성·비치)</b>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b>제 3 장 사 채</b>		
<b>(신설)</b>	<b>제16조 (사채의 발행)</b>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b>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b>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b>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b>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p>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b></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b>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b></p> <p>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b>제19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b></p>	<p><b>제19조의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b></p>	
<p><b>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b></p> <p>제 15조의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b>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b></p> <p>제 12조의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b>제 4장 주주총회</b></p>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제4조의 공고방법에 따라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1절 이 사**

<p><b>제33조 (이사의 수)</b> 이 회사의 이사는 4인이하로 한다</p>	<p><b>제33조 (이사의 수)</b>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4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b>제2절 이 사 회</b>		
<p><b>제40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b>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b>제40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b>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 소집기간 단축
<p><b>제41조 (이사회 결의방법)</b>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b>제41조 (이사회 결의방법)</b>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b>(신설)</b></p>	<p><b>제43조(위원회)</b>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투명경영위원회  2. 내부거래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p> <p>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43조 (상담역 및 고문)</b>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p>	<p><b>(삭제)</b></p>	
<p><b>제3절 대표이사</b> <b>제6장 감 사</b></p>		
<p><b>제47조 (감사의 선임)</b></p> <p>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b>제47조 (감사의 선임·해임)</b></p> <p>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p> <p>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b>제49조 (감사의 직무)</b></p> <p>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b>제49조 (감사의 직무)</b></p> <p>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38조(이사의 의무)의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b>제7장 계 산</b>		
<p><b>제5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b></p> <p>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p>	<p><b>제5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b></p> <p>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p>	

<p>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p>2. 손익계산서</p> <p>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p> <p>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p>	<p>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5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b></p> <p>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또는 감사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5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b></p> <p>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56조 (이익배당)</b></p> <p>① 이익의 배당금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p>	<p><b>제56조 (이익배당)</b></p> <p>① 이익의 배당금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④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p>	

	<p>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56조의1 (중간배당)</b></p> <p>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li> <li>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li> <li>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li> <li>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적립한 임의준비금</li> <li>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li> </ol>	<p><b>제56조의2 (중간배당)</b></p> <p>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li> <li>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li> <li>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li> <li>4.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li> <li>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적립한 임의준비금</li> <li>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li> </ol>	
<p><b>제57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b></p> <p>③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p>	<p><b>제57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b></p> <p>③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p>	
<b>부 칙</b>		
<p><b>제58조 (정관 시행일)</b></p>	<p><b>제58조 (정관 시행일)</b></p> <p>(변경 시행일) 2025년 8월 01일부터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p>	(변경 시행일 추가)
<p><b>제59조 (본점의 소재지 변경) 삭제</b></p>		

### 별첨3. 바이오스펙트럼 임원퇴직금규정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현 행	개 정 안	비 고
<b>제2조 적용범위</b> 본 규정이 적용되는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를 말한다.	<b>제2조 적용범위</b> 본 규정이 적용되는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를 말한다.	
제2장 퇴 직 금		
<b>제3조 지급대상</b> 본 규정의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한다. 이 때 퇴직의 정의는 법인세법 상의 “현실적 퇴직”으로 한다.	<b>제3조 지급대상</b>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실제적인 퇴직과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지급한다. 1) 실제적인 퇴직: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와 임원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및 해임 ③ 재임 중 사망 2) 현실적인 퇴직: 근무는 계속하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퇴직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설)	<b>제4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b>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할 때 3)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할 때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해당할 때									
(신설)	<b>제5조 근속연수의 계산</b> 1) 근속연수는 휴직, 정지기간을 제외한다. 단, 육아휴직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속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하여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 근무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3)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할 수 있다.									
(신설)	<b>제6조 지위 변경</b> 1)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으며, 이후 임원 근속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2)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업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 계속적인 근무로 간주한다.									
<b>제4조 퇴직금의 산정</b> 1) 임원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은 1년동안 해당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X 1/12 X 지급율로 한다. 총급여액이란 급여와 상여 등의 근로소득을 말한다. 2) 지급율의 적용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b>제7조 퇴직금의 산정</b> 1) 매년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X 1/12 X 지급율로 한다. 총급여액이란 급여와 상여 등의 근로소득을 말한다. 2) 상근이사(대표이사, 사내이사)의 지급율은 200%로 정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직위</th> <th>지급율</th> <th>직위</th> <th>지급율</th> </tr> </thead> <tbody> <tr> <td>대표이사</td> <td>3배</td> <td>임원(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td> <td>2배</td> </tr> </tbody> </table>	직위	지급율	직위	지급율	대표이사	3배	임원(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2배		
직위	지급율	직위	지급율							
대표이사	3배	임원(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2배							
<b>제5조 지급방법</b>	<b>제8조 지급방법</b>									

<p>회사는 매년1회이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임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외부금융기관에 불입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제4조의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불입한다.</p>	<p>회사는 매년1회이상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임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외부금융기관에 불입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제7조의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불입한다.</p>	
<p><b>제6조 지급제한</b>  1) 퇴직자 본인의 문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고 상당 부분 인정된 때에는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전항의 지급유예나 제한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p>	<p><b>제9조 지급제한</b>  1) 퇴직자 본인의 문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고 상당 부분 인정된 때에는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전항의 지급유예나 제한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p>	
<p>(신설)</p>	<p><b>제10조 퇴직금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b>  1)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의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퇴직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율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연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단, 법의 개정으로 인한 이율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개정된 법을 준용한다.</p>	
<p>(신설)</p>	<p><b>제11조 수령인</b>  1) 퇴직금은 본인 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임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청구 및 수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재산 상속순위에 의한다.</p>	